

31. 이탈리아(Italy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19년
- 현행법 : 1952년(연금재구성), 2005, 2008, 2009, 2010, 2011, 2012, 2013, 2013, 2016년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, 국가확정기여(NDC)제도, 사회부조제도
 - ※ 1996년 새로운 가입자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국가확정기여제도로 대체 적용됨, 국가확정기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, 18년 미만 가입기간인 근로자는 과도기(혼합)제도에 가입됨; 1996년~2011년까지 국가확정기여제도 도입 시 18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구/신제도 선택할 수 있음;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현재 과도기(혼합)제도에 가입됨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제도, NDC
 - 당연적용 : 민간분야 근로자(가정 근로자 포함), 자영자
 - 임의가입 : 계약직 및 전문직
- 사회부조제도
 - 이탈리아 시민,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EU국민, 이탈리아에서 영주권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비EU국민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제도, NDC
 - 총소득의 9.19%, 공연예술가/무용수는 9.89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법정 최저일급과 단체협약에 의한 분야별 최저일급 중 높은 금액
 - 법정 최저일급 : €48.20
 - 1996년 이전 가입한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은 없음
 - 199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소득상한은 연 €101,427
 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제도, NDC
 - 연 신고소득의 24%~34.23% (업종, 가입종별에 따라 상이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소득 상한액 : €77,717, 하한액 : €15,710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제도, NDC
 - 임금지급총액의 23.81%; 공연예술가/무용수는 25.81% (경제적으로 낙후된 특정지역의 사용자는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됨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법정 최저일급과 단체협약에 의한 분야별 최저일급 중 높은 금액
 - 법정 최저일급 : €48.20
 - 1996년 이전 가입한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은 없음
 - 199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소득상한은 연 €101,427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제도, NDC : 결손액;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제도 : 총 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 및 NDC)
 - 가입기간 및 가입인정기간이 20년 이상인 66세 7개월 도달자 (2019년까지 67세로 상향, 이후에는 기대여명에 따라 상향 조정), 또는 혼합제도 대신 구제도 적용을 원할 경우 1995년 직전의 5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및 가입 인정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
 - 1996년 이후 신규 가입자들은 NDC계좌 잔고가 월 노령사회수당의 1.5배 이상이거나 70세 7개월 도달 및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(계좌 잔액 상관없이)
 - 월 노령사회수당 : €453
 - 최저보장연금 : 월 최저생계소득에 미달하는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또는 혼합제도 수급자에게 지급
 - 월 최저생계소득 : €507.42
 - 퇴직 필수 (자영자 제외)
 - 조기연금 : 가입기간이 42년 10개월(남성) 혹은 41년 10개월(여성) 이상이어야 함

- 1996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63세 7개월이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NDC 계좌 잔액이 월 노령사회수당의 2.8배 이상이어야 함
- 퇴직 필수 (자영자 제외)
 - 해외지급 가능 (소득조사 최저액과 보조금 제외)
- 노령사회수당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66세 7개월(2019년까지 67세로 상향, 이후에는 기대여명에 따라 상향 조정)이며 사회보험이나 NDC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며 이탈리아에서 10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자
 - 소득조사 : 연 소득이 독신은 €5,889, 기혼자는 €11,788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해외지급 불가
- 저소득 연금 보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저소득 노령, 장애, 유족연금 수급자 및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지급
 - 70세(장애인은 60세, 가입기간에 따라 65세 이상) 이상인 자
 - 소득조사 : 연 개인소득이 독신은 €8,370.18, 기혼자는 €14,259.18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 및 NDC)
 -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청구 직전 5년 중 3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자(자영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 등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음)
 - 퇴직 필수
 - 가입자가 산재장애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, 산재장애연금을 초과하는 장애연금 일부만 지급됨
 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0세 이상이고, 개인소득이 연 노령사회수당 및 보조금보다 낮으며, 연 총 가구소득이 €12,619.75 미만이어야 함
 - 연 노령사회수당(보조금 포함) : €6,023.29
 - 해외지급 가능
- 부분장애수당(사회보험+NDC, 소득조사)
 - 근로능력의 2/3 이상을 상실한 상태이며, 청구 직전의 5년 중 3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어야 함
 - 근로 계속 가능
 - 소득조사 : 연 최저 연금액의 4배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지급
 - 연 최저 연금액 : €6,596.46
 - 최저통합급여 : 가입자의 연 소득(연금 포함)이 €11,778 미만이고 가구 연 소득이 €17,667 미만일 경우 지급

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0세 이상이고, 개인소득이 연 노령사회수당 및 보조금보다 낮으며, 연 총 가구소득이 €12,619.75 미만이어야 함
- 연 노령사회수당(보조금 포함) : €6,023.29
-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 부분장애연금은 퇴직연령 도달시 중지되고 노령연금으로 전환됨
- 가입자가 산재장애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, 산재장애연금을 초과하는 장애연금 일부만 지급됨
-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18세 이상 정년 미만이고,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, 다른 사회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아야 함
 - 근로 계속 가능
 - 소득조사 : 연 소득(연금 포함)이 €16,664.36 미만이어야 함
 - 장애사회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합칠 수 있음
 - 상시간호 보조금 :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시로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
 - 최대 6개월까지 해외지급 가능
- 부분장애사회수당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18세 이상 정년 미만이고, 근로능력을 74~99% 상실했으며, 다른 사회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아야 함
 - 퇴직 필수
 - 소득조사 : 연 소득(연금 포함)이 €4,853.29 미만
 - 부분장애사회수당은 장애와 관련되지 않은 사회보험연금과 합칠 수 있음
 - 최대 6개월까지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 및 NDC, 자산조사)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, 근로중에 가입기간이 780주 이상이었거나 사망 직전 5년 이내의 156주를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최소 260주 이상이었던 경우 지급
 - 자산조사 : 1995년 9월 1일 이후 처음 지급된 연금에 대해 유족수급자가 연 유족연금 최저액(€6596.46)의 3배, 4배 또는 5배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됨.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6세), 장애인은 자산조사 면제됨
 - 수급권자 : 배우자 또는 동성배우자; 이혼수당 수급권이 있는 별거중인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피부양 조카나 손자녀(정규 학생인

경우 21세, 대학생인 경우 26세, 가입자의 사망 당시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

- 기타 수급권자(상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) :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망자의 피부양자였던 65세 이상의 부모
- 재혼 시 지급 정지
- 재혼수당 : 수급자가 재혼했을 시 지급
- 사망일시금(사회보험 및 NDC) : 사망자가 사망 이전 5년 중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연 평균소득, 가입기간(최대 40년), 그리고 연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계수[€46,630 (하한)의 경우 2%, €77,717 (상한)의 경우 0.9%]에 의해 결정됨
- 사회보험연금은 2011년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며, 파생된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
-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연 소득은 1993년 이전에는 생계비 변동에 따라, 1992년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최저보장연금 : 월 노령연금과 최저생계급여(€507.42) 간의 차액 지급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; 월 연금액이 매우 낮을 경우 6개월마다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• 노령연금(NDC)

- 지난 5년간의 GDP 성장을 평균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른 보험통계 계수(57세 : 4.246%, 70세 이상 : 6.378%)에 기반을 두어 보정된 명목기여도에 따라 산정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; 월 연금액이 매우 낮을 경우 6개월마다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 및 NDC)

- 1996년 1월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노령연금과 동일하게, 199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NDC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
- 1995년 이전의 5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는 NDC 노령연금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
- 최저보장연금 : 월 노령연금과 최저생계급여(€507.42) 간의 차액 지급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노령사회수당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연 소득이 €5,889(미혼), €11,788(기혼) 미만인 수급자에게 최대 월€453 지급
 - 65세 이상이며 연 소득 €5,889(미혼), €12,485.46(기혼) 미만인 수급자에게 월 €12.92 추가 지급
 -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€8,370(미혼), €14,259.18(기혼) 미만인 수급자에게 월 €190.86 추가 지급
 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저소득 연금 보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자격이 되는 수급자에게 최대 월 €136.44 지급
 - 월 연금과 보조금의 최대 총액은 €643.86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연 평균소득, 가입기간(최대 40년), 그리고 연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계수[€46,630 (하한)의 경우 2%, €77,717 (상한)의 경우 0.9%]에 의해 결정됨
 - 사회보험연금은 2011년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며, 파생된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
 - 장애발생연령과 퇴직연령 간의 차이에 따라 급여 지급
 - 가입자가 산재장애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, 산재장애연금을 초과하는 장애연금 일부만 지급됨
 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5세 미만의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€10.33/월, 65세 이상일 경우 상향 지급
 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애연금(NDC)
 - 지난 5년간의 GDP 성장을 평균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른 보험통계 계수(57세 : 4.246%, 70세 이상 : 6.378%)에 기반을 두어 보정된 명목기여도에 따라 산정

- 57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57세에 상응하는 계수가 사용됨
- 장애발생시 연령과 60세 간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; 최대 40년(2,080주)
- 연금최저액
 - 60세 이상이고 개인소득 €13,192.92 이하이며 가구소득 €26,385.84 이하일 경우 €507.42
 - 다른 경우에는 최저액 없음
- 가입자가 산재장애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, 산재장애연금을 초과하는 장애연금 일부만 지급됨
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5세 미만의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€10.33/월, 65세 이상일 경우 상향 지급
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애연금(사회보험 및 NDC)
 - 1996년 1월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장애연금과 동일하게, 199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NDC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산정
 - 1995년 이전의 5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는 NDC 장애연금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
 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5세 미만의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€10.33/월,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 지급
- 부분장애수당(사회보험 + NDC, 소득조사)
 - 사회보험, NDC, 혹은 사회보험 및 NDC 혼합 장애연금을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3년 기간 연장될 수 있음(퇴직연령과 장애발생일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제외)
 - 세 번 연속 지급된 후에는 영구적으로 지급
 - 소득조사 : 가입자의 연 소득이 연 최소연금액(€6,596.46)의 4배를 초과할 경우 연금액을 25%만큼, 5배를 초과할 경우 50%만큼 삭감
 - 가입자가 산재장애연금 수급자격이 될 경우, 산재장애연금을 초과하는 장애연금 일부만 지급됨
 - 최저통합급여(소득조사) : 연 장애수당과 연 최저 연금액 간의 차액 지급
 - 저소득 보조금(소득조사) : 65세 미만의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€10.33/월,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 지급
 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월 최대 €282.55 지급
 - 상시간호수당 : 월 €516.35 지급
 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
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부분장애사회수당
 - 월 최대 €282.55 지급
 - 지급시기 : 매월 지급, 12월에 13번째 급여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최저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저소득 연금 보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노령연금 항목 참고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 및 NDC)
 - 배우자연금(자산조사) : 자녀가 없는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60%를 지급; 자녀(피부양 조카, 손자녀 포함)가 1명인 경우 80%; 2명 이상인 경우 100%
 - 재혼일시금 : 배우자의 연금 2년 일시금으로 지급
 - 고아연금 (자산조사 없음)
 - 완전고아 1명(피부양 조카, 손자녀 포함)인 경우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70%를 지급; 2명인 경우 80%; 3명인 경우 100%
 - 연금은 균등 분배됨
 - 기타유족연금(자산조사) : 상기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,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5%를 수급자격이 되는 각 유족에게 지급
 - 소득조사 : 1995년 이후 처음 수급한 유족연금은 유족의 소득이 연 최저 유족연금액의 3, 4, 5배를 초과할 경우 각각 25%, 40%, 50% 감액
 - 연 최저 유족연금액 : € 6,596.46
 -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망인·홀아비(학생인 경우 26세), 고아, 혹은 장애인의 경우 소득조사 면제
 - 최대 합한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사망일시금
 - 1996년 1월 이전 신규 가입자 : 사망자의 총 납부 보험료의 45배 일시금지급
 - 총 납부 보험료 상한액 €66.93, 하한액 €22.31
 - 199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 : 월 사회수당 (€ 453)에 가입기간(연수)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저소득 연금 보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노령연금 항목 참고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) 및 재경부(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)
 - <http://www.lavoro.gov.it>, <http://www.tesoro.it>
 - 전반적 감독

- 국민사회보험청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<http://www.inps.it>
 - 지사를 통한 강제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
 - 특정 범주의 근로자를 위한 특별제도의 관리운영

<2018년 ISSA 자료>